

중소기업간 기술융합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소기업간 기술, 지식 융합 촉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중소기업간 지식기술융합화와 신사업창출 촉진 방안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의 중소기업간 지식, 기술 융합 실태 및 지원정책을 조사한 결과 선도기술을 보유한 강한 중소기업의 발굴은 일본이 제조업강국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말 현재 일본의 지식,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이업종 교류그룹 수는 2,557개로 우리나라 274 개의 9.3배, 참여기업 수는 14만 5,421개사로 우리나라 5,684개의 25.6배에 이르는 등 중소기업간 지식, 기술융합화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이처럼 일본에서 중소기업간 지식, 기술 융합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1988년 융합화법 제정 이후 융합화촉진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신용보증 및 조세지원 특례 적용, 융합화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해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중소기업간 지식, 기술융합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간 지식 기술융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지식 기술융합 개발 및 사업화 자금 지원, 신용보증 및 조세지원 특례 마련, 지역별 중소기업융합화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업종 중기 융합 활성화 필요

이업종 교류에 의한 지식, 기술융합화란 업종이 다른 기업들이 특정 조직을 만들어 서로 다른 경영 및 기술 정보를 교류 결합함으로써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진출능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 대기업과 하도급거래 관계를 갖는 분업조직, 공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생산방식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것이었음에 비해 이업종 기업간의 지식 기술 교류는 동일 업종에서 얻을 수 없는 외부경제효과의 활용이라는 범위의 경제를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구성을 살펴보면, 진입기 및 성장기보다 성숙기와 쇠퇴기라는 응답 비율이 55.3%로 조사되어 새로운 기술개발 및 시장 개척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결속관계가 강했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하도급거래구조가 기존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수평적 거래관계로 변화하면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지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 등 개도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시장에 주로 의존해오던 중소기업이 수입품과의 경쟁 격화로 경쟁력을 급속하게 잃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을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요인은 중소기업

으로 하여금 신제품, 신기술 개발, 신시장 진출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적, 물적 경영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업종 중소기업 간 지식 기술 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이 필요하다.

일본 중기 1981년부터 본격 추진

일본에서 이업종교류에 의한 지식, 기술융합화가 시작된 것은 1970년 초반부터이나, 중소기업의 이업종 교류활동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81년 중소기업사업단 주도로 실시한 기술 시장교류프라자사업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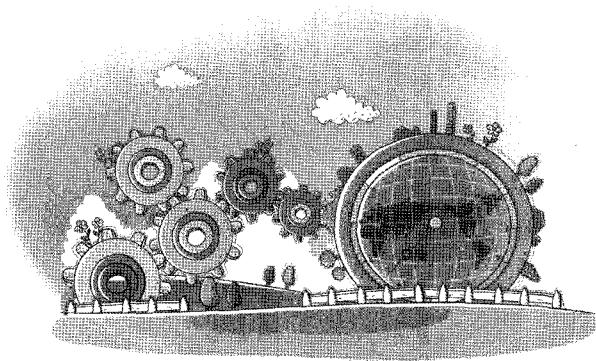
이 사업을 계기로 이업종교류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보급되었으며, 중소기업간 기술이전과 교류의 촉진, 기술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부분의 지방 자치단체가 이를 추진하고 있어, 1981년은 이업종교류가 실질적,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1981년 이후 일본에서 이업종교류 그룹이 활발하게 결성되기 시작하여 1988년 1,500여개, 1990년에는 2,036개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 3,103개에 이르렀으며, 1999년부터는 감소하여 2008년 말 2,557개의 이업종교류 그룹이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업종교류 그룹 결성에 따라 이업종교류에 참가하는 기업의 수는 1988년 5만 5,000여개에서 지속적으로 2008년 말 현재 14만 5,421개(한국 5,684개)기업이 이업종교류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융합화법 제정

일본정부는 중소기업간 이업종교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88년 이분야 중소기업의 지식 융합에 의한 신분야 개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일명 융합화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다른 분야 중소기업간 지식융합에 의한 신분야 개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한 중소기업의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본 산업구조 전환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두었다.

융합화법의 주요 내용은 지식융합 개발사업계획의 인정, 자금의 확보, 중소기업신용보험법의 특례, 과세의 특례,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특례, 지도 및 조언 등으로 구성되었다.

1955년에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중소기업창조법)을 제정하면서 1988년 제정한 융합화법을 흡수하였다.

2005년에는 기존의 중소기업창조법과 1998년 제정한 신사업창출촉진법, 1999년 제정한 경영혁신법을 정리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신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새로 설립된 기업의 사업활동 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다른 분야 중소기업의 제휴에 의한 신사업분야 개척 등 중소기업의 신사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융합화 체계적 지원

융합화법에 의한 이업종 중소기업간 융합화는 교류단계를 시작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기 위한 개발단계, 사업화에 이르는 사업화단계, 시장유통을 도모하는 시장전개단계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본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우선 다른 분야 중소기업을 조합원으로 하는 사업협동조합은 지식융합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당해 계획이 다른 분야 중소기업의 지식융합에 의한 신분야 개척을 추진하기 위해 유효 또는 적절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별로 융합화센터를 설치 운영하였다.

교류단계에서는 지방정부 및 중소기업사업단에 의한 교류지원사업이 주로 실시되었다. 지방정부는 중소기업의 다른 분야 경영자원과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이업종 중소기업이 월 1회씩 모여 기술 시장문제에 대한 의견교환, 정보교류 등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경비를 중앙정부와 50:50의 매칭펀드방식으로 보조하였다. 중소기업사업단은 권역단위, 전국 단위의 기술시장교류프라자사업을 개최함과 아울러 교류전문가의 선발 양성 및 파견 사업을 실시하였다.

개발단계에서는 융합화개발촉진사업, 시험연구개발세제 감면 등을 실시하였다. 융합화개발 촉진사업의 경우, 이업종 교류 결과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조사 분석, 시제품의 종합시험, 평가, 신제품 신용역의 일반 전시, 보급사업 등을 보조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요비용

을 50%씩 부담한다

사업화단계에서는 중소기업융합화 촉진 고도화자금 및 중소기업융합화촉진 특별대출, 중소기업융합화 특례보증, 세제지원 등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사업단의 중소기업융합화촉진 고도화자금은 토지, 건물, 설비 구입등에 대해 응자대상시설 취득가액의 80% 이내, 상환기간 20년 이내에서 무이자로 응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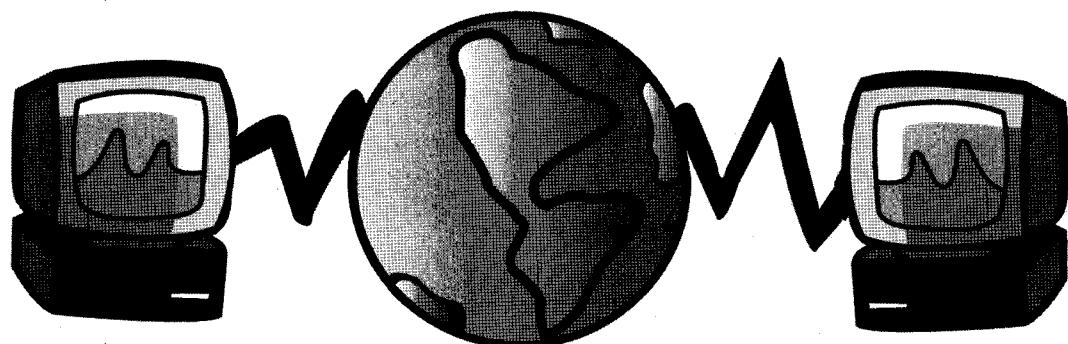
사업전개단계에서는 융합화 성과의 시장 유통 촉진에 관한 조사연구, 융합화박람회 개최사업 지원, 전국중소기업융합화 촉진재단의 설립을 지원한다.

‘05년 이후 사업화 집중 지원

2005년 중소기업신사업활동촉진법을 제정한 이후 이업종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신제휴 촉진에 의한 신사업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제휴란 사업분야를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제휴하여 설비, 기술, 지식 등 경영자원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신사업활동을 함으로 신사업분야의 개척을 도모하는 것이다.

신사업활동이란 신상품의 개발 또는 생산, 신용역의 개발 또는 제공, 상품의 새로운 생산 또는 판매 방식의 도입, 새로운 용역 제공방식의 도입 및 그 외의 새로운 사업활동을 말한다. 신사업분야의 개척을 위한 정부의 지원기간은 3~5년으로 한정한다.

신제휴가 구성되기 위한 요건은 핵심 중소기업의 존재, 중소기업의 주체적 참여, 참여 사업자간 규약



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신제휴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신제휴지원지역전략회의 사무국의 대상자의 요건, 신제휴계획의 내용, 신청접수, 지원조치의 내용 등을 문의하게 된다.

신제휴사업은 중앙정부가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책으로 신제휴계획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신제휴대책 보조금 지원, 신제휴 사업자금융자, 신용보증 및 세제 지원, 중소기업 투자육성주식회사의 지원, 특허료 감면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제휴사업 자금 융자는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중소기업금융공고, 상공조합중앙금고 등을 통해 설비자금, 운전자금이 무이자 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지원된다.

신용보증 지원의 경우, 일반보증보다 높은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인하조치를 실시한다. 세제지원의 경우는 신제휴계획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30% 특별상각 또는 7%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특허료 감면의 경우 특허출우너료 및 특허심사료의 50%를 경감한다.

우리도 중기간 융합법 필요

중국 등 아시아개발 도상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면서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1980년대 말 일본과 같이 국내시장에서 수입제품과 심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글로벌화 추진으로 모기업과의 거래관계 또한 안정적,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앞으로 이업종 중소기업간 지식, 기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개발, 신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소기업간 지식기술융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간 지식 기술융합 개발 사업계획 인정, 중소기업간 지식, 기술융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지도, 중소기업간 지식 기술융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의 특례, 과세의 특례, 특허료 감면과 함께 중소기업융합화 센터 등 인프라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지식 기술융합 지식 기술융합 지원시책 강구 등을 들 수 있다.

지식 기술융합 촉진제도 마련

중소기업간 지식 기술융합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기 위해 지역전략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 육성 등과 연계하여 지식 기술융합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마련한 필요가 있다.

교류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씩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발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참여중소기업이 소요비용을 1/3씩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사업화 및 시장전개단계에서는 융합사업화 자금 지원, 신용보증제도 특례마련, 조세지원, 특허료 감면, 지식기술융합화 박람회 개최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융합 활성화용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간 지식 기술융합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중소기업융합화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융합화센터에는 교류전문가를 최소 1인 이상 배치하여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시 근무하는 교류전문가는 지역에서의 이업종교류회 결성 및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성과가 높은 인재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지식 기술융합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별 단위 교류회 구성 및 활동 현황, 지식 정보교류 성공사례, 지식 기술교류의 장 등이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디비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디비의 종합적 구성체계 및 이업종 교류 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